

부수업무에 대한 준법감시인 검토 의견

상기 보고 부수업무는

1. 타인의 특별자산 사업의 진행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로서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.
2. 당사가 보유한 유희 인력과 설비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므로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바 동 부수업무로 인하여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.
3. 집합투자업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
 - 1)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 및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어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고,
 - 2) 펀드 운용업무 등 고유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므로 부수업무로 인하여 운용 등 고유업무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및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.
4. 제도적인 금융시장 외적인 부분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는 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.

이에 당사의 특별자산 컨설팅 부수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아이피자산운용(주)

준법감시인 전무 이 창 훈 (인)

